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적립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 제 2조 【청약의 철회】
- 제 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 4조 【계약의 무효】
- 제 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 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이전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 철회권】
- 제 7조 【특별계정의 운용】
- 제 8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 제 9조 【계약의 소멸】
- 제10조 【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제12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제13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1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1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제20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제21조 【해지환급금】
- 제22조 【배당금의 지급】
- 제23조 【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 제24조 【계약전 알릴의무】
- 제25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제26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제27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28조 【주소변경 통지】
- 제29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 제30조 【대표자의 지정】
- 제31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제32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33조 【보험금 등의 지급】
- 제34조 【계약내용의 교환】
- 제35조 【보험계약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

- 제36조 【분쟁의 조정】
- 제37조 【관할법원】
- 제38조 【약관의 해석】
- 제39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제4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제4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제42조 【준거법】
- 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적립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이 보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 보험의 거치형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취급하여 함께 운용(계약의 해지, 변경, 이전 및 효력 등)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해설

【제1회 보험료】

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예정이율】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

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자산운용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비싸게 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
 계약자가 회사가 게시한 약관의 열람 확인 버튼을 누른 때, 혹은 위와 같은 명시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로그 분석 상 그 행위가 인정될 때를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하여 받는 대출입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 및 4조】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 ③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해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과실】

어떤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

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보험가입금액)
2.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나이 및 연금지급기간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보험가입금액)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나이 및 연금지급기간은 연금개시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의 거치형 계약과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나이 및 연금지급기간을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용어해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이전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

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 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가) 이전신청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나)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다)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라)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마) 다음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보험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보험계약(특약 포함)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계약(특약 포함)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하는 경우 회사는 약관에 의하여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특별계정의 운용】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용어해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② 제1항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

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용어해설
【일반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제8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이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 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전 전 계약의 경과기간 포함)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통합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함)의 누계액에 대해서 관련세법에 의거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이주
5.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사망으로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⑤ 본 조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보험나이】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가입시에 18세 이상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금개시나이가 55세 이상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용어해설

【보험나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출생일부터 보험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0년 1월 20일

예1) 2012년 7월 10일에 가입

예2) 2012년 12월 10일에 가입

2012년 7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2012년 12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2년 5개월 20일

☞ 보험나이 32세

만 32년 10개월 20일

☞ 보험나이 33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해설

【제1회 보험료】

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게 되는 시작일입니다.

제12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

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합니다.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
 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계약체
 결시 또는 이후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고, 납입최고서 도달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이 약관 제28조(주소
 변경 통지) 제2항에 따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
 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
 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
 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
 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p>【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 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p>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
 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
 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
 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일),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4조(계약전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5조(계약전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용어해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연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제1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연금개시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일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20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하고, 15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1.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
- A_{12}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_0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2.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합니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합니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text{가중이동평균이율 } (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④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용어해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1.0%일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부리됩니다.

제21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 15년 초과된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용어해설

【해지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2조 【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배당금을 매년 “회사가 정한 매사업연도별 배당금 적립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지급하거나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연금에 증액연금 또는 가산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매사업연도별 배당금 적립이율”은 직전회계연도 표준이율 중 가장 높은 이율과 같거나 높게 적용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23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용어해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4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한다.

제25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함께 당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7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p>【취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p>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연금에 대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30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1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2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3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⑤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용어해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제34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5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 ④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이전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6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9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용어해설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제4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2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 (약관 제17조)

종신연금형(정액형, 체증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 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형(정액형, 체증형)

지급 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 금액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10회 보증 지급)

나. 확정연금형

지급 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확정지급
지급 금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동안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란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3.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각각의 확정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각각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10회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1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5. 위의 제3호 및 제4호의 보증지급기간(확정지급기간)안에 사망시에는 해당되는 연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 의해 연금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연금개시후 종신연금 보증지급기간(확정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하고, 15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8.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은 10년 보증부 체증형으로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10%)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경과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1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용어해설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콜레라나. 장티푸스다. 파라티푸스라. 세균성이질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

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
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㉞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
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연금 (약관 제17조)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이 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이 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 (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해지 환급금 (제21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 간: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2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약관 제23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표4)

수수료 예시표

(기준: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20만원, 60세 연금개시, 10년납, 월납)

구분	목적	시기	비 용
보험 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10년미만 : 기본보험료의 5.5%(11,000원) 10년이후 : 기본보험료의 1.5%(3,000원)
연금수령기 간 중 비용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

주) 보험관계비용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만 차감되는 비용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거치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 제 2조 【청약의 철회】
- 제 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 4조 【계약의 무효】
- 제 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 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이전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 철회권】
- 제 7조 【특별계정의 운용】
- 제 8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 제 9조 【계약의 소멸】
- 제10조 【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1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1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제1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제17조 【해지환급금】
- 제18조 【배당금의 지급】
- 제19조 【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 제20조 【계약전 알릴의무】
- 제21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제22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제23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24조 【주소변경 통지】
- 제25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 제26조 【대표자의 지정】
- 제2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제2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29조 【보험금 등의 지급】
- 제30조 【계약내용의 교환】
- 제31조 【보험계약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

- 제32조 【분쟁의 조정】
- 제33조 【관할법원】
- 제34조 【약관의 해석】
- 제3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제3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제3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제38조 【준거법】
- 제39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거치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가입시부터 연금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일부터 종신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이 보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전받은 금액은 이 보험의 일시납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보험의 적립형 계약과 함께 가입할 경우 이 보험의 적립형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취급하여 함께 운용(계약의 해지, 변경, 이전 및 효력 등)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해설

【제1회 보험료】

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예정이율】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자산운용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비싸게 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 계약자가 회사가 게시한 약관의 열람 확인 버튼을 누른 때, 혹은 위와 같은 명시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로그 분석 상 그 행위가 인정될 때를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하여 받는 대출입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 및 4조】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 ③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⑤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해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과실】

어떤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나이 및 연금지급기간
2.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나이 및 연금지급기간은 연금개시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의 적립형 계약과 연금지급형태, 연금개시나이 및 연금지급기간을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이전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의 다른 연금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 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 가) 이전신청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나)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 다)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 라)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 마) 다음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보험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보험계약(특약 포함)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계약(특약 포함)


 용어해설
<p>【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p>

제7조 【특별계정의 운용】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용어해설
<p>【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p>

② 제1항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용어해설
<p>【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p>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제8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이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 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전 전 계약의 경과기간 포함)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통합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함)의 누계액에 대해서 관련세법에 의거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이주
5.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사망으로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⑤ 본 조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

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가입시에 18세 이상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금개시나이가 55세 이상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용어해설

【보험나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출생일부터 보험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0년 1월 20일

예1) 2012년 7월 10일에 가입 예2) 2012년 12월 10일에 가입

2012년 7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2년 5개월 20일

☞ 보험나이 32세

2012년 12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2년 10개월 20일

☞ 보험나이 33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해설

【제1회 보험료】

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게 되는 시작일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연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제1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연금개시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
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일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
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1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
다.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하고, 15년을 초과하는 경과기
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
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
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1.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
- A_{12}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_0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2.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합니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합니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text{가중이동평균이율 } (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④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용어해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금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1.0%일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부리됩니다.

제17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 15년 초과외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용어해설

【해지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18조 【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배당금을 매년 “회사가 정한 매사업연도별 배당금 적립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지급하거나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연금에 증액연금 또는 가산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매사업연도별 배당금 적립이율”은 직전회계연도 표준이율 중 가장 높은 이율과 같거나 높게 적용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9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용어해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0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한다.

제21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함께 당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3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4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연금에 대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6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9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⑤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용어해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제30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1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이전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2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용어해설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제3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8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39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 (약관 제13조)

종신연금형(정액형, 체증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 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형(정액형, 체증형)

지급 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 금액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지급(10회 보증 지급)

나. 확정연금형

지급 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확정지급
지급 금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동안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란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3.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각각의 확정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각각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10회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1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5. 위의 제3호 및 제4호의 보증지급기간(확정지급기간)안에 사망시에는 해당되는 연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 의해 연금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연금개시후 종신연금 보증지급기간(확정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하고, 15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8.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은 10년 보증부 체증형으로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10%)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경과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10.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생명표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용어해설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콜레라나. 장티푸스다. 파라티푸스라. 세균성이질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

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
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㉞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
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연금 (약관 제13조)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이 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이 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 (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해지 환급금 (제17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 간: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약관 제19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표4)

수수료 예시표

(기준: 남자 55세, 일시납보험료 5,000만원, 56세 연금개시)

구분	목적	시기	비 용
보험 관계비용	계약체결 비용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0원)
	계약관리 비용	초월도	일시납보험료의 0.25%(125,000원)
		2차월 이후	기본보험료의 0.02%(10,000원)
연금수령기 간 중 비용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

주) 보험관계비용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만 차감되는 비용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즉시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 제 2조 【청약의 철회】
- 제 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 4조 【계약의 무효】
- 제 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 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이전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 철회권】
- 제 7조 【특별계정의 운용】
- 제 8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 제 9조 【계약의 소멸】
- 제10조 【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1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1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제1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제17조 【해지환급금】
- 제18조 【배당금의 지급】
- 제19조 【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 제20조 【계약전 알릴의무】
- 제21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제22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제23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24조 【주소변경 통지】
- 제25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 제26조 【대표자의 지정】
- 제2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제2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29조 【보험금 등의 지급】
- 제30조 【계약내용의 교환】
- 제31조 【보험계약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

- 제32조 【분쟁의 조정】
- 제33조 【관할법원】
- 제34조 【약관의 해석】
- 제3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제3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제3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제38조 【준거법】
- 제39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연금저축 체인지업연금보험(즉시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종신연금형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이 보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전받은 금액은 이 보험의 일시납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제1회 보험료】

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예정이율】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자산운용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말할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비싸게 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

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해설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
 계약자가 회사가 게시한 약관의 열람 확인 버튼을 누른 때, 혹은 위와 같은 명시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로그 분석 상 그 행위가 인정될 때를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하여 받는 대출입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 및 4조】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 ③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 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해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과실】

어떤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이전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 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가) 이전신청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나)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다)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라)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마) 다음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보험계약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보험계약(특약 포함)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계약(특약 포함)



용어해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

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7조 【특별계정의 운용】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용어해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② 제1항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용어해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제8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이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전 전 계약의 경과기간 포함)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통합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함)의 누계액에 대해서 관련세법에 의거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이주
5.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사망으로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⑤ 본 조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보험 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가입시에 18세 이상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금개시나이가 55세 이상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용어해설	
【보험나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출생일부터 보험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0년 1월 20일	
예1) 2012년 7월 10일에 가입	예2) 2012년 12월 10일에 가입
2012년 7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2012년 12월 10일 - 1980년 1월 20일
----- 만 32년 5개월 20일	----- 만 32년 10개월 20일
☞ 보험나이 32세	☞ 보험나이 33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해설
【제1회 보험료】 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처음 내는 보험료입니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게 되는 시작일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연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제1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②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지급주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계약자가 월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개월 경과 되는 날부터 매월 보험계약해당일에, 3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3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3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6개월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만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 6개월 보험계약해당일에, 연지급을 선택할 경우에는 만1년 경과되는 날부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해당연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연금개시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일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1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하고, 15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 ~ 120%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text{공시기준이율 산출식} = \frac{\text{내부지표} + \text{외부지표}}{2}$$

1. 내부지표

$$\text{내부지표 산출식} = \frac{2 \times (I - E)}{A_{12} + A_0 - (I - E)}$$

- I : 직전 12개월간 투자수익
- E : 직전 12개월간 투자비용
- A_{12} : 산출시점 직전 12개월초 현재 운용자산
- A_0 : 산출시점 직전 월말 현재 운용자산

2. 외부지표

$$\text{외부지표산출식} = B1 \times r + B2 \times (1 - r)$$

- B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3년만기)의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합니다.
- B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다만, 회사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 AA-(3년만기) 시가평가기준 수익률(YTM)로 합니다.
- r : 산출시점 전월말 기준 당사 보유 채권의 장부가액 중 국고채권의 비율로 하며, 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text{가중이동평균이율 } (B_i) = \frac{B_i(-3) \times 1 + B_i(-2) \times 2 + B_i(-1) \times 3}{6}$$

- $B_i(-3)$: 산출시점에서 직전 3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2)$: 산출시점에서 직전 2월의 월평균 수익률
- $B_i(-1)$: 산출시점에서 직전 1월의 월평균 수익률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④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용어해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1.0%일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부리됩니다.

제17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 15년 초과인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용어해설

【해지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18조 【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배당금을 매년 “회사가 정한 매사업연도별 배당금 적립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지급하거나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연금에 증액연금 또는 가산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매사업연도별 배당금 적립이율”은 직전회계연도 표준이율 중 가장 높은 이율과 같거나 높게 적용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9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용어해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0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한다.

제21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함께 당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0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3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4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연금에 대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6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8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연금의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9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⑤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전문의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제30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1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이전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2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용어해설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제3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

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8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39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 (약관 제13조)

종신연금형(정액형, 체증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 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형(정액형, 체증형)

지급 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 금액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기준연금연액을 지급주기에 따라 계산한 금액지급(10회 보증 지급)

나. 확정연금형

지급 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년 ~ 2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확정지급
지급 금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1년 ~ 20년)동안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기준연금연액을 지급주기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 지급

- (주) 1. 「계약자적립금」이란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경됩니다.
3.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각각의 확정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각각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일에 드립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10회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1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5. 연금의 지급시기는 연단위 연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만1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지급하며, 분할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월 선택시에는 만 1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월, 3개월 선택시에는 만 3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매3개월마다, 6개월 선택시에는 만 6개월 경과시점부터 매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6. 위의 제3호 및 제4호의 보증지급기간(확정지급기간)안에 사망시에는 해당되는 연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 의해 연금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연금개시후 종신연금 보증지급기간(확정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로 하고, 15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9.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은 10년 보증부 체증형으로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10%)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며, 체증기간 경과후에는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용어해설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콜레라나. 장티푸스다. 파라티푸스라. 세균성이질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

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
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㉞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
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연금 (약관 제13조)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이 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이 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 (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해지 환급금 (제17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 간: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1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약관 제19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표4)

수수료 예시표

(기준: 남자 55세, 일시납보험료 5,000만원, 55세 연금개시)

구분	목적	시기	비 용
보험 관계비용	계약채결 비용	매월	기본보험료의 0.00%(0원)
	계약관리 비용	초월도	일시납보험료의 1.00%(500,000원)
연금수령기 간 중 비용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5%